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2015. 1. 1 제정

2017. 4. 1 일부개정

2017. 9. 1 일부개정

<교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이하 ‘타대학’이라 한다)의 학생 및 학점의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를 위한 전제) 이 시행세칙에 따라 학생 및 학점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 본교와 타대학 사이의 협정 등 교류를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조(학교규칙의 준수) ① 교류협정 등에 의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 소속 학생(이하 ‘타교학생’이라 한다)은 본교의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교의 학교규칙을 위반한 타교학생에 대해서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교류협정 등에 의하여 타대학에서 생활하는 본교 소속 학생(이하 ‘본교학생’이라 한다)은 본교의 학교규칙은 물론 타대학의 학교규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타대학의 학교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국내교류

제1절 본교학생의 타대학 수학

제4조(자격) 본교학생이 타대학 학점교류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 재학생으로서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다만, 계절수업은 휴학중인 학생도 가능)
2. 졸업 예정자가 아닐 것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일 것

제5조(신청) 타대학에서 학점교류를 원하는 본교학생은 해당 타대학에 직접 신청한다. 다만, 본교와 해당 타대학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수학기간) 본교학생이 학점교류를 위하여 타대학의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 참여하

는 경우에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해당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7조(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①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교양
2. 핵심교양
3.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

② 전공과목(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④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다.

제8조(취득학점의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사운영 규정」 제48조와 제49조 따른다.

제9조(수강신청 및 변경) 타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 포함)은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성적평가 및 인정) ①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②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학점인정 등) ① ‘학점인정’이란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본교의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해당 타대학 성적증명서상의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을 그대로 표기한다.

④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시킨다.

⑤ 타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및 이수구분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결정하되, 학점체계가 본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변환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대체로 인정하는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임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F학점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청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⑦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타대학에 납부한다.

제2절 타교학생의 본교 수학

제13조(자격) ① 타교학생이 본교의 학점교류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본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타교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교류 수학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계절 수업은 휴학 중인 학생도 학점교류가 가능함)

2. 소속 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전제로 학점교류 허가를 받았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교류 자격을 제한한다.

1. 학점교류생으로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학을 취소한 학생

2. 그밖에 본교의 학업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교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수학신청 및 허가) 학점교류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학생은 본교의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수학신청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15조(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학점교류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제16조(정원) 본교는 필요에 따라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점교류생의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학점교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18조(교과목 이수) 학점교류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학생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본교에서 학점교류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및 과목별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취득학점 범위) 학점교류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학생이 정규학기에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총 1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0조(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수학취소) ① 학점교류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다가 수학을 취소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타대학의 학적변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수학을 취소할 경우는 본교에서 정한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제22조(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학교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타교학생 및 그

학생의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제23조(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해당 타교학생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본교에 납부한다. 다만,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4조(시설물의 이용) 학점교류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학생에 대해서는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국제교류

제1절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유형

제25조(교환학생제도) ① 교환학생제도(SEP: Student Exchange Program)는 본교와 외국 타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제도이다.

- ②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은 전공에 관계없이 본교의 서울 및 세종캠퍼스의 재학생으로서, 평점평균(GPA)이 2.80 이상인 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선별한다.
- ③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파견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년이며, 각 프로그램의 1회 파견 시 교환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한다.
- ④ 교환학생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견 대학과 파견 기간을 변경 할 수 없다.
- ⑤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면제받으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⑥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26조(방문학생제도) ① 방문학생제도(VSP: Visiting Student Program)란 본교와 외국 타대학 간 방문학생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학생을 파견하는 제도이다.

- ② 방문학생 파견기간은 파견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년이며, 각 프로그램의 1회 파견 시 방문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한다.
- ③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은 파견기간 동안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해당 학교에 납입하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방문학생은 방문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27조(단기파견제도를 통한 학점인정의 제한) ① 단기파견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인정 어학연수제도(제28조)
 2. 국제하계대학 교환제도(제32조)
- ② 단기파견제도를 통해 본교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③ 각 단기파견제도를 통해 1회에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학사운영 규정」 제49조에 따른다.

- 제28조(학점인정 어학연수제도) ① 방학 중 학점인정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학점인정 어학연수 신청서 및 해당대학 입학허가서를 구비하여 소정 기간에 국제처에 신청한다.
- ② 학점인정 어학연수제도는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총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연수대상교는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4년제 외국 소재 대학에 한한다.

- 제29조(자비유학생) ① 자비유학으로 해외대학 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서의 수학하기 전 학기말까지 자비유학신청서와 해당 대학 입학허가서를 소속 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수대상교는 외국 소재 4년제 대학에 한한다.

- 제30조(단과대학 자체협정 교류학생) ① 단과대학 자체협정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 및 방문 학생은 단과대학의 선발 및 파견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 ② 단과대학 자체협정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의 명단 및 변동사항은 매학 기 시작 전에 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국제하계대학) ① 본교에서 운영하는 국제하계대학(ISC: International Summer Campus)은 학칙 제21조 제3항의 계절수업으로 인정한다.
- ② 국제하계대학의 지원자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32조(국제하계대학 교환제도) ① 국제하계대학 교환제도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처에서 정하는 협정교에서 운영하는 국제하계대학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제하계대학 교환제도는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2학점이다. 다만, 1회 참가 시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 ③ 국제하계대학 교환제도 지원자는 소속 학과의 학과장에게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 및 학점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본교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제2절 본교학생의 외국 타대학 수학

- 제33조(연수대상) ① 연수대상은 유수한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대학 학생교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 및 공동학위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외국대학 연수를 마친 학생은 연수 후 졸업 학기를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 졸업학기 및 복수전공 졸업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제34조(신고의무) ① 외국대학 연수 학생은 출국 전에 서약서, 동의서, 출국신고서, 해외유학생 보험증서 등을 소정 기간 내에 국제처 및 해당 프로그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 ② 외국대학 연수 학생은 귀국 즉시 귀국신고서, 경험보고서를 국제처 및 해당 프로그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 외국대학 연수 학생은 연수기간 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번역문,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연수대학, 정규과정, 대학부설어학원 등의 적합 여부는 학과(부)에서 판정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국제처가 선별하는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과정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연수 사항의 표시) ① 학생이 연수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마친 때에는 수강신청을 생략하며 학적부에 ‘외국대학연수’ 표시를 한다.

- ② ‘외국대학연수’가 표시된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처리 시까지 학기말 성적 통지를 유보한다.

제38조(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교환학생의 교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3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이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한 학기당 최대 19(졸업요구학점이 130학점을 초과하는 학과(부) 소속학생은 20)학점이며, 1년간(2학기 이상) 최대 38(졸업요구학점이 130학점을 초과하는 학과(부) 소속학생은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을 본교의 과목으로 대체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표에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대학 이수성적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상의 성적을 그대로 표기한다.

- 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 ⑥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의 이수구분은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결정하되, 학점체계가 본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변환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⑦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임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Fail, Non-pass, Unsatisfactory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청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⑧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교의 성적 부여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수학대학의 성적체계를 별도 기재한다.
- ⑨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0조(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 ①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이 기록된 성적증명서 원본과 수학대학에서 발행한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단과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② 모든 증명은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다. 다만, 단과대학 자체 과전 학생들은 소속 학사지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③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 타교학생의 본교 수학

제41조(자격) ① 본교와 외국 타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협정 상대교에서 선발된 학생 및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ISEP)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본교 Student Exchange Program(SEP)에 지원할 수 있다.

② Visiting Student Program(VSP)을 통하여 자비 방문학생으로 단기간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4년제 외국대학에서 최소한 2학기를 수료하고, 학점(GPA)이 2.80(4.50 만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2조(지원 및 수학허가) ① SEP 및 VSP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지원서 및 필요 서류를 매 학기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하며,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수학을 원하는 학생: 전년도 11월 15일까지
2. 2학기 수학을 원하는 학생: 해당 연도 5월 15일까지

② SEP 및 VSP의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교와 소속 대학간의 협의에 따라 수학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등록 및 입국절차) ① SEP 입학 허가자는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하며, 본교의 등록금은 면제받는다. 다만, 기타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협정에 의해 따로 정한 학교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VSP 입학 허가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교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허가서를 받은 SEP 및 VSP 참가자는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다.

④ 중국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인증서를 발급받아 송부한다.

⑤ 북한국적의 학생은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신분 및 학점취득) ① SEP 및 VSP 학생은 학적부에 '국제처 교환학생'으로 표기하고 본교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교 시설 및 복지혜택,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② SEP 및 VSP 학생은 학기당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교 취득학점은 학생의 소속대학 학교규칙에 따른다.

제45조(의료공제) SEP 및 VSP 학생은 소정 금액을 지불하면 본교에서 제공하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학교규칙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로부터 「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과 「국내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캠퍼스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제2항 신설, 제40조 제3항 개정)